

대법원 2022. 10. 14 선고 2022다249862(본소), 2022다249879(반소) 판결

[대여금 · 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2. 10. 14 선고 2022다249862(본소), 2022다249879(반소)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2. 6. 10 선고 2021나60488(본소), 2021나60471(반소) 판결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여수시법원 2021. 6. 2 선고 2020가소14143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상고인

A

피고(반소원고), 상고인

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선

판 결 선 고 2022. 10. 14.

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. 6. 10. 선고 2021나60488(본소), 2021나60471 (반소)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살펴본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피고(반소원고)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안철상, 대법관 노정희, 주 심 대법관 이흥구